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범위에관한조례등증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9. 9. 20.  
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9월 2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9년 9월 6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66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1999년 9월 15일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 가.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이 '98년 10월 9일자로 제·개정 시행되어 동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부칙으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여 자치법규의 효력은 있으나, 자치법규 내용 중 직제·직명 등이 개정조례에서 정한 직제·직명 등과 불일치하여 개정조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1) 국·과·계의 명칭변경

- 기획실(장) → 행정관리국(장)
- 시민생활국(장) → 생활복지국(장)
- 도시정비국(장) → 도시관리국(장)
- 건설국(장) → 건설교통국(장)
- 기획예산담당관 → 기획예산과(장)
- 문화공보담당관 → 문화체육과(장)
- 시민과(장) → 민원봉사과(장)
- 부과1, 2과(장) → 부과과(장)
- 사회복지과(장)·가정복지과(장) → 사회복지과(장)
- 생활환경과(장) → 청소행정과(장)
- 주택과(장)·도시정비과(장) → 도시관리과(장)
- 계(장) → 팀(주사) 또는 담당(주사)

#### 2) 담당관·과 소속부서 조정

- 기획실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 행정관리국
- 총무국 소관 민방위재난과(장) → 도시관리국
- 도시정비국 소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 건설교통국
- 건설국 소관 공원녹지과 → 도시관리국

#### 3) “계”제 폐지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송성만)

동 조례안은 지난 '98년 10월 9일자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전문개정하면서 명칭변경 및 소속부서가 조정된 직제, 직명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부칙에 명시하고, 발효 후 정비되지 않은 19개의 개별조례의 직제나 직명 등을 개정조례에서 일치되도록 일괄 정비하는 내용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5.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범위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9
----------	----

제출년월일 : 1999. 9. 2.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개정 이유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이 '98년 10월 9일자로 제·개정 시행되어 동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부칙으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여 자치법규의 효력은 있으나, 자치법규 내용 중 직제·직명 등이 개정조례에서 정한 직제·직명 등과 불일치하여 개정조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국·과·계의 명칭변경
  - 기획실(장) → 행정관리국(장)
  - 시민생활국(장) → 생활복지국(장)
  - 도시정비국(장) → 도시관리국(장)
  - 건설국(장) → 건설교통국(장)
  - 기획예산담당관 → 기획예산과(장)
  - 문화공보담당관 → 문화체육과(장)
  - 시민과(장) → 민원봉사과(장)
  - 부과1, 2과(장) → 부과과(장)
  - 사회복지과(장)·가정복지과(장) → 사회복지과(장)
  - 생활환경과(장) → 청소행정과(장)
  - 주택과(장)·도시정비과(장) → 도시관리과(장)
  - 계(장) → 팀(주사) 또는 담당(주사)
- 담당관·과 소속부서 조정
  - 기획실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 행정관리국
  - 총무국 소관 민방위재단과과 → 도시관리국
  - 도시정비국 소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 건설교통국
  - 건설국 소관 공원녹지과 → 도시관리국
- “계”제 폐지

## 3. 참고사항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조례제403호 '98. 10. 9 공포)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규칙제284호 '98. 10. 9 공포)
- 예산조치사항 : 해당없음
- 합의사항 : 합의되었음

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범위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제1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의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국·실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을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으로 하며, 동조 제4호의 “실”을 “담당관”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공인조례의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의정계장이”를 “의정담당주사가”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의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의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의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의 내용중 “기획실장”을 삭제하고, “총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시민생활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도시정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의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의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의 “기획실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의 “총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시민생활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하며, “도시정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하고, “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의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의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로 한다.

제4조제1항의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의 “기획예산담당관, 의회법제계장이”를 “기획예산과장, 의회법제담당주사가”로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의회법제계”를 “기획예산과 의회법제담당으로 한다.”

제7조의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담당 계장”을 “담당 주사”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명위원회조례의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며

제6조중 “동정계장이”를 “동행정담당주사가”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의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  
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의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주무계장이”를 “지가조사담당주사가”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의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지가조사계장으로”를 “부동산관리담당주사가”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시민생활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중 “총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도시정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  
로, “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중 “시민생활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의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  
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도시정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주관계장으로”를 “주관담당주사”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의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안전  
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도시정비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지역교통과장”을 “교통행정과장”  
으로 “도시정비과장”을 “도시관리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지역교통과 지역교통계장이”를 “교통행정과 교통시설담당주사가”로 한  
다.

제14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의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  
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도시정비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의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  
리공단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도시정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  
로, “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의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중 “도시정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술자문위원회조례의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술자문위원회조

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담당계장이”를 “담당주사가”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의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총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의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조직제규칙에 의하여”를 삭제하고 “주무계장으로”를 “보건기획담당주사”로 한다.

## 부 칙

이 개정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p>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범위) .....</p> <p>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국·실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3. (생략) 4. .... 실·과장과 .....</p> <p>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공인조례 제7조(공인의 관리 및 보관)공인은 의정계장이 관리하며, .....</p> <p>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제25조(간사) ① (생략) ②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p> <p>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3조 ① (생략) ② (생략) ③ 위원은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생활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p> <p>.....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p> <p>5.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3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생활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p> <p>제5조 ① (생략)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p>	<p>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범위) .....</p> <p>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3. (현행과 같음) 4. .... 담당관·과장과 .....</p> <p>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공인조례 제7조(공인의 관리 및 보관) 공인은 의정담당주사가 관리하며, .....</p> <p>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제25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p> <p>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3조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p> <p>.....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p> <p>5.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p> <p>제5조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p>

현행	개정 (안)
<p>6.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 제2조(설치) 상담실은 <u>기획예산담당관</u>에 둔다. 제4조(운영) ① 상담 운영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u>기획예산담당관</u> 책임하에 운영한다. 제6조(상담관) ① 상담관은 <u>기획예산담당관, 의회법제계장이 되며, 상담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의회법제계</u> 근무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7조(입석 등) <u>기획예산담당관</u>은 필요한 경우 해당과의 <u>담당계장</u> 또는 실무자 .....</p>	<p>6.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 제2조(설치) 상담실은 <u>기획예산과</u>에 둔다. 제4조(운영) ① 상담 운영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u>기획예산과장</u> 책임하에 운영한다. 제6조(상담관) ① 상담관은 <u>기획예산과장, 의회법제담당주사가 되며, 상담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기획예산과 의회법제담당</u>에 근무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7조(입석 등) <u>기획예산과장</u>은 필요한 경우 해당과의 <u>담당주사</u> 또는 실무자 .....</p>
<p>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명위원회조례 제2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u>출무국장</u>이 된다. 제6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u>총무과장</u>이 되고 서기는 <u>동절계장</u>이 된다.</p>	<p>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명위원회조례 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u>행정관리국장</u>이 된다. 제6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u>총무과장</u>이 되고 서기는 <u>동행정담당주사</u>가 된다.</p>
<p>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u>출무국장</u>이 되며, 위원은 <u>기획예산담당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무과장, 구청장이</u> 지명하는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재난관련단체나 기관의 인사로 한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 ① (생략) ② 기금운용관은 <u>총무국장</u>, 기금출납원은 <u>재난관리계장</u>이 된다.</p>	<p>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u>도시관리국장</u>이 되며, 위원은 <u>기획예산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무과장, 구청장이</u> 지명하는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재난관련단체나 기관의 인사로 한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운용관은 <u>도시관리국장</u>, 기금출납원은 <u>재난관리담당주사</u>가 된다.</p>
<p>9.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u>주무과장</u>이 되고 서기는 <u>주무계장</u>이 된다.</p>	<p>9.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u>주무과장</u>이 되고 서기는 <u>지가조사담당주사</u>가 된다.</p>
<p>1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u>지적과장</u>으로 서기는 <u>지가조사계장</u>으로 한다.</p>	<p>1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u>지적과장</u>으로 서기는 <u>부동산관리담당주사</u>로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1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위원회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u>시민생활국장</u>이 된다. ③ 위원은 영등포구청 <u>총무국장</u>, 재무국장, <u>도시정비국장</u>, 건설국장, 보건소장과 물가에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등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① (생략) ② (생략)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u>시민생활국장</u>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p>	<p>1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위원회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u>생활복지국장</u>이 된다. ③ 위원은 영등포구청 <u>행정관리국장</u>, 재무국장, <u>도시관리국장</u>, <u>건설교통국장</u>, 보건소장과 물가에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등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u>생활복지국장</u>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p>
<p>1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3조(구성) ① (생략) ② (생략) ③ 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u>도시정비국장</u>은 당연직으로 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생략) ② 간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u>주관계장</u>으로 한다.</p>	<p>1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u>도시관리국장</u>은 당연직으로 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u>주관담당주사</u>로 한다.</p>
<p>1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제3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영등포구 부구청장(이하 부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u>도시정비국장</u>이 되며 ..... 1. 기획예산과장. 2. 지역교통과장 3. 도시정비과장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생략) ② 간사는 <u>지역교통과</u> <u>지역교통계장</u>이 되고 서기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교통안전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p>	<p>1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제3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영등포구 부구청장(이하 부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u>도시관리국장</u>이 되며 ..... 1. (현행과 같음) 2. 교통행정과장 3. 도시관리과장 제6조(간사와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u>교통행정과</u> <u>교통시설담당주사</u>가 되고 서기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p>



현행	개정 (안)
<p>14.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 제3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u>도시정비국장</u>, 부위원장은 교통지도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의 각호의 자로 한다.</p>	<p>14.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u>건설교통국장</u>, 부위원장은 교통지도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의 각호의 자로 한다.</p>
<p>15.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9조(이사) ① (생략) ② 이사중 3인은 비상임으로 하되 <u>총무국장</u>, <u>도시정비국장</u>, <u>건설국장</u>이 된다.</p>	<p>15.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9조(이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중 3인은 비상임으로 하되 <u>행정관리국장</u>, <u>도시관리국장</u>, <u>건설교통국장</u>이 된다.</p>
<p>16.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 제4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u>도시정비국장</u>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생략)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u>도시정비국장</u>이 된다.</p>	<p>16.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 제4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u>도시관리국장</u>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u>도시관리국장</u>이 된다.</p>
<p>17.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술자문위원회조례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간사는 부의 관련 주관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부서의 담당계장이 된다.</p>	<p>17.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술자문위원회조례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간사는 부의 관련 주관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부서의 <u>담당주사</u>가 된다.</p>
<p>1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2조(재해대책본부의 조직) ① (생략) ② (생략) ③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원으로 구성하며, 통제관은 <u>총무국장</u>, 담당관은 관련과장이 되고 실무반은 관련 공무원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자 등으로 한다.</p>	<p>1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2조(재해대책본부의 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원으로 구성하며, 통제관은 <u>행정관리국장</u>, 담당관은 관련과장이 되고 실무반은 관련 공무원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자 등으로 한다.</p>
<p>19.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생략) ② 간사는 <u>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직제규칙에 의하여</u> 소관업무를 주관하는 주관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관과의 <u>주무계장</u>으로 한다.</p>	<p>19.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생략) ② 간사는 소관업무를 주관하는 주관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관과의 <u>보건기획담당주사</u>로 한다.</p>